제2부

Sentencing Commission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개요

양형기준 설정

2015. 4, 27. 출범한 제5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2015. 7. 6. 제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그 임기를 전반기 (2015, 4, 27, ~ 2016, 4, 26,)와 후반기(2016, 4, 27, ~ 2017, 4, 26,)로 나누어 전반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후반기에는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 라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양형기준안 작성과 관련 되는 구체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2017. 1. 4.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 문위원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2017, 4, 10, 제78차 회의에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 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 의결 된 양형기준은 2017. 5. 1.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7.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양형기준 수정 \prod

위원회는 2015. 7. 6. 제66차 회의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국민의 법감정 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통,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안을 제5기 양 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하였으며, 2016. 7. 11. 제7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범죄의 양 형기준을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포함하였다. 위원회는 2016. 4, 18, 제72차 회의에서 절도, 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2016. 7. 11. 제73차 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위 수정 양형기준은 2016. 8. 8.자 관보에 게재되었고, 2016. 9. 15.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 9. 5. 제74차 회의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 여. 2016. 12. 5. 제76차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위 수정 양형기준 은 2017. 1. 3.자 관보에 게재되었고. 2017. 1. 15.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2017. 1. 4. 제77차 회 의에서는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2017, 4, 10, 제78차 회의에서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주을 의결하였다. 위 수정 양형기주은 2017. 5. 1.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 \mathbf{III}

우영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운영규정 제21조).

우영지원단은 양형기준 적용으로 인한 효과, 양형기준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제1기 양형기준 적 용대상 사건과 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제2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2012, 7, 1, 또는 9,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제3기 양형기준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범죄 양 형기준 적용대상 사건과 2013.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 결선고된 제3기 양형기준 중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그리고 2014, 7, 1, 이 후 또는 10.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배임수증 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2015, 7. 1. 이 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6. 4. 1. ~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 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2016,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2017. 3. 31,까지 판결선고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적용대 상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2017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내용 은 제2부 제11장에 수록하였다.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

양형위원회 회의

양형위원회는 회의체 조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안건을 의결한다(법 제8]조의5. 규칙 제5조 제1항),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기 별로 2회씩 연간 8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우영규정 제2조)

1. 회의일정 (2017. 4. 26. 기준)

차 수	일 시	안 건
72차	2016. 4. 18.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73차	2016. 7. 11.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추가선정(지식재산권범죄)
74차	2016. 9. 5.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75차	2016. 10. 21.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지식재산권,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76차	2016. 12. 5.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77차	2017. 1. 4.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지식재산권,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78차	2017. 4. 10.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2. 주요 회의 결과

가. 제72차 회의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 운영지워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실시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 회의유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받고.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나, 제73차 회의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여부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에 대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및 책자 발간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외국 양형제도 파악을 위한 교류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2016 양형기준 책자 발간

2016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전문위원 개임, 연임 위촉 및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 제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등 추가선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회신 결과 및 제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운영지원단으로부터 2016 양형 기준 책자 발간,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등을 보고받은 다음,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을 수 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다. 제74차 회의

(1) 회의안건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촉식 개최
 - 2016년도 제7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 전문위원 개임 및 연임위촉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에 대하 여 보고받고, 운영지원단으로부터 2016년도 제7차 자문회의 개최 등을 보고받은 다음, 공무집행

방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라, 제75차 회의

(1) 회의안건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대부업법·채권추심법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전무위원 회의 언무지원
 -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
 - 양형위원회 워크숍 개최
 - 2015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대부업법·채권 추심법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운영지원단으로부터 2016년도 국정감사 수감 경과 등을 보고받은 다음,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마. 제76차 회의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 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2016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진회 결과 보고
- 자문위원 개임
- 2016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 2015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2017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검토, 지식재산 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 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양형기준 설정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바. 제77차 회의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 형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2017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각종 의겨 점수 및 처리
- ▶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유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도주 ·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도주·범인으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 최계획안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사 제78차 회의

- ▶ 전문위원 업무보고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 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자문위원 연임 위촉
 - 2017년도 양형위원회 제8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2016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결과 보고
-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도주·범인은님,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 형기준 및 위증,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 위증·증거인멸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 2016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

(2) 회의요지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으로부터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도주·범인은 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 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 정 양형기준 도주·범인으니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 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전문위원 회의 \prod

전문위원 전체회의 일정 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103차	16. 6. 20.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여부 검토 제출자료 ·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안종열) · 기술유출 사범 -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이용) · 영업비밀침해행위 - 양형기준 수정 여부(안종열)
104차	16. 8. 22.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출자료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수정 추가 검토(이용)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수정 검토(정준화) ·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김현아) · 영업비밀침해 - 양형기준 수정(안종열)
105차	16. 10. 11.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제출자료 도주·범인은닉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1](안종열)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군(이용)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 (김현아)
106차	16. 11. 21.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검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검토 제출자료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검토(이용)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재검토(김현아) · 도주·범인은닉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군(이용)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Ⅱ)(안종열)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군(이용)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군 검토(Ⅱ)(김현아)

차 수	일 시	안건 및 제출자료
107차	16. 12. 26.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제출자료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김현아) 도주·범인은닉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군Ⅲ(이용)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검토(안종열)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군 검토Ⅲ(이용)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정준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군 검토Ⅲ(김현아)
108차	17. 3. 27.	 ●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 제출자료 ·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전휴재) ·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전휴재)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구민경)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구민경)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구민경) ·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의견조회 결과 정리(김도연)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검토(구민경)

2-2



전문위원 제108차 전체회의(2017. 3. 27.)

제3장

제5기 양형기준 마련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제5기 위원회는 2015. 7. 6. 제66차 회의에서 근로기주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삿범죄 를 전반기(2015, 4, 27, ~ 2016, 4, 26.)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 수표단속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를 후반기(2016, 4, 27, ~ 2017, 4, 26,) 설정 대상 범죄 군으로 의결하였다.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된 주요 사정은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금지의무 위반, 해고 등 제한의무 위반, 취업 방해 금지의무 위반, 근로감독과의 위법사실 고의 묵과행위, 금품청산의무위반, 임금지 급의무위반, 도급사업 또는 건설업에서의 임급지급의무위반, 휴업수당지급의무위반, 연 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닷지급의무 위반, 여성·미성년자 사용금지의무위반, 갱내근로금 지의무위반 등 발생빈도. 국민적·사회적 관심도 등이 높은 범죄군
-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과 화경을 침해하며, 소비 자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증대
- 과실치사상범죄 : 최근 세월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등 안전사고 관련 국민적 관심 이 높고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안전사고 발생이 적 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실무상 필요성도 높으며 징역형의 선고 건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 관심도 및 실무상 필요성도 높은 범죄군
- 도주·범인은닉범죄: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 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증, 무고범죄군과 함께 사법질서방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의 완결적 의미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통화위·변조, 유가증권위·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등 발생빈도 및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피 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아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 죄군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그 밖의 채권추십 과정에서의 북법했위 등 경제적 고굿에 처한 서민들을 삿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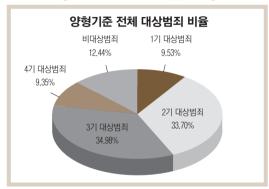
제5기 호반기 양형기준 설정 경과 П

-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에 관하 양형자료조사(2016. 3. 14. ~ 3. 31.)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 기주아 의결(2017 1 4)
 -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17. 1. 18. ~ 2017. 2. 10.)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3차 공청회 개최(2017, 2, 6.)
-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 기준 의결(2017. 4. 10.) 및 시행(2017. 7. 1.)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효과 \mathbf{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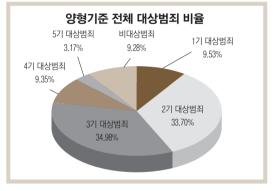
- ▶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으로 전체 구공판사건 기준 약 90.72%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 준 설정 완료
- ▶ 제1. 2. 3. 4. 5기 양형기준 설정 현황(구공판사건 기준 양형기준 설정율)

[1기+2기+3기+4기 양형기준]



누적비율: 87.56%

[1기+2기+3기+4기+5기 양형기준]



누적비율: 90,72%

제5기 호반기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가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안

- ▶ 국가 형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 유형 및 '범인은닉·도피' 유형 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 '도주' 유형 : 사전계획,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 '범인은닉·도피' 유형 : ① 사전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경제적 대가의 수수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나.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 현대 경제생활에서 필수적인 통화. 유가증권 등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 위·변조 등' 유형.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유형 및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
- ▶ '통화 위·변조 등/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유형 : 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암선 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② 다량의 통화 (유가증권)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③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는 등 범죄로 이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① 범죄 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할 경우 등 악의적인 미지 급(수표부도)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 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위반' 유형 및 '채권추심법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 '대부업법위반' 유형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 로, 일회성이거나 단기간 영업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

로 반영

▶ '채궈추심법위반' 유형 : 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검쳐 반복적으 로 범행한 경우 ②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

제4장

양형기준 수정

개요

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변화된 법감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5, 7, 6, 제66차 회의에서 제5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교통,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 위증·증 거인멸범죄름 의결하였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 7. 11. 제73차 회의에서 지 식재산권범죄를 수정 대상 범죄군에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5기 후반기에 전문위원단은 전문위 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 준 초안을 마련하였고. 위원회는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각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 결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의결된 각 수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 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시행하였다.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수정 경과 및 내용

1. 추진 경과

(1)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위원회는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여 제72차 회의(2016, 4, 18,)에서 절도, 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제74차 회의(2016. 9. 5.)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을, 제77차 회의(2017, 1, 4,)에서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 의 결하였다.

(2) 의견수렴 절차

- 위원회는 위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2016. 4. 2. 부터 2016. 5. 18.까지 국 회 등 28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록 실시하고 그 결과록 검토하여 이름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 ▶ 위원회는 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2016. 9. 8. 부터 2016. 10. 7.까 지 국회 등 27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십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양형기준 수정 안에 반영하였다.
- ▶ 위원회는 위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2017. 1. 11. 부터 2017. 2, 10.까지 각각 국회 등 31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이름 양형기준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3)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 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 의견 조회 결과를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2016. 7. 11. 제73차 회의에서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6, 12, 5, 제76차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 형기준을. 2017. 4. 10. 제78차 회의에서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각 최종 의결하였다.
- ▶ 의결된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6. 9. 15. 이후,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 준은 2017. 1. 15. 이후,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7. 5. 15. 이후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배경

▶ 2011. 7. 1. 절도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으 며, 상습절도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

(나)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및 양형인자 수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 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 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한 경우(4유형)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u>상습범인 경우</u>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9명 인자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 2유형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기중
-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 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 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 지 않았던 경우 	 흉기를 휴대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인자	행위자 <i>/</i> 기타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u>상습범인 경우</u>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상습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 <u>한을 1.5배 기중</u>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이다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생계형 범죄피해 경미소극 가담	 흉기를 휴대한 경우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2)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배경

▶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상습장물 유형에 관하여 함께 수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및 양형인자 수정

▶ 일반장물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 ▶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 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 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	부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2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u>상습범인 경우</u>
일반 양형 이지	행위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인자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누범장물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배경

- ▶ 시행(2011. 7. 1.) 이후 상당기간 시행성과가 축적되었고, 폭력범죄 양형기준과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조정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나) 권고 형량범위 수정 내용

▶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1년 4월 <u>1년6월</u>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u>7년</u>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다) 서술식 양형기준 추가 및 양형인자 수정

▶ 공무집행방해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폭행·협박·위계의 정도 또는 공 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괴도하거나 부적절 한 경우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 /기타	 심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 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 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 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 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 하지 아니하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공용물무효·파괴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괴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i>/</i> 기타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 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프	9.000	1997.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 한경우 ● <u>참작할 만한 범행동기</u>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양형인자의 정의 수정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 느 경우 등을 의미하다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 른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 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하다.
-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계획적 범행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저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 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4)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배경

▶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범죄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 대상에 포함

(나) 양형기준 추가

▶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증거인멸·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다) 양형인자의 정의 추가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되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2016

제2부 2016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다수인이 역할을 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 나 기숙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했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 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명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 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 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라. 소극 가담

-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 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인명한 증거가 복워되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가) 배경

- ▶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국가차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산업기술유출행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반영 및 주의 환기 필요성

(나) 권고 형량범위 수정 내용

▶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3년6월	2년 - 5년 6년

(다) 양형인자 수정 내용

▶ 영업비밀침해행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기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 니하고 회수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u>귀엽자</u>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피해규모가 큰 경우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양형인자의 정의 추가

사.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 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 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위원회 제77차 정기회의(2017. 1. 4.)